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0
------	------

2025. 6.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3일, 이민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6.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은 900여 개에 이르며,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장서·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현행	개정안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신설> (생략)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회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작은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개정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음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1) 시행일: 2025. 8. 1.

- 서울시의 경우, 관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수요 대비 예산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지원으로써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28조제1항)

-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초기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라 개소당 2백만원을 정액 지원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는 1~3백만원을 차등 지원²⁾하는 방식으로 지원 변경되었음.
- 지난 3개년간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체 작은도서관 수 대비 약 1/3 수준의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역시 동일한 예산 규모로 유사한 수준인 391개관을 지원할 계획임.

< 2022~2024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사업예산	추진실적
2022	560,000	1,121개관(공립447, 사립674) 중 361개관(공립172, 사립189) 지원
2023	782,000	1,131개관(공립445, 사립686) 중 418개관(공립219, 사립199) 지원
2024	782,000	1,108개관(공립425, 사립683) 중 384개관(공립201, 사립183) 지원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 2023년에는 2022년 실시한 서울시 주요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로서 설립 주체와는 별개로 인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독서문화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략)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그동안 일률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조금의 차등 지급 체계를 벗어나 서울시 관내 약 1,100여 곳의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로서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시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독서를 위한 장소에서 마을 지역 단위 문화 향유의 장으로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의안번호
272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이민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 필요 <주요입법 요지> ○ 인력, 장서, 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시(안 제28조 제1항 신설)		
추진경과	○ 조례 제정한 발의(이민석 의원 발의, 2025.5.23.)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 없음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팀장 김지혜(☎2133-0220)	담당 김현주(☎2133-022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3일

발 의 자: 이민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황철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은 900여 개에 이르며,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장서·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신설></p> <p>(생 략)</p>	<p>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① <u>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작은도서관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시장의 노력의무¹⁾를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는 기추진 사업²⁾이므로 별도의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해당 조문 검토 필요성] 노력의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Ex.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어 재정 수반 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 [기추진사업]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료구입비 지원과 운영비, 작은도서관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지원
 - 서울시 서울도서관 2025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 588,000천원
 - 서울시 서울도서관 2025년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787,000천원